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검역법」 내 시스템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내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맞추어, 연계를 통하여 수집·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집·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함(제5조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수집·제공할 수 있는 정보) ①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2조에 따른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·위험요인 여부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내역

②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명, 성별, 국적, 생년월일, 여권번호, 주소, 전화번호
2. 도착 연월일, 운송수단명, 좌석번호, 방문국가
3. 검역감염병 증상, 감염·위험요인 여부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조(수집·제공할 수 있는 정보)</u> ①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법 제12조에 따른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·위험요인 여부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내역 ②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성명, 성별, 국적, 생년월일, 여권번호, 주소, 전화번호 2. 도착 연월일, 운송수단명, 좌석번호, 방문국가 3. 검역감염병 증상, 감염·위험요인 여부
<u>제5조 ~ 제9조 (생략)</u>	<u>제6조 ~ 제10조</u> (현행 제5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	
연 락 처	(043) 719 - 9203